

## 2026년 경남 산업안전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공고

경상남도과 (재)경남테크노파크는 경남지역 중소·중견기업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하여 2026년도 경남 산업안전AI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9월

(재)경남테크노파크원장

### < 주요 일정 및 유의사항 >

#### <주요 일정>

| 신청 · 접수기간         | 선정평가     | 협약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|
| 공고일 ~ '26년 9월 30일 | '26년 10월 | '26년 12월 ~ |

#### <2026년 주요내용>

| 지원유형               | 구축기간 및 총사업비        | 지원목표 | 지원비율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고도화 단계<br>(중간1 이상) | 최대 9개월,<br>기업당 4억원 | 4개사  | 도비 35%, 시군비 35%<br>자부담 30% |

※ 신청가능 지역: 창원, 진주, 김해, 양산

#### < 경남 산업안전시 구축지원사업 유의사항 >

- 2026년 경남(산업안전분야) 사업계획서 양식 변경에 따라 반드시 확인 필요
- 사업계획서 재해예방 및 개선을 위한 산업안전AI 시스템(솔루션 등) 도입 필수
  - 사업계획서 '1.4.1산업안전 공정개선 목표'는 필수작성
  - \* 산업안전AI 시스템(솔루션 등)은 사업계획서 54P [참고]산업안전분야 인증 및 위험 요인 상세 참고
- 데이터표준(OPC-UA) 필수 반영
- 스마트공장 구축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 반영 필요
  - 사업계획서 1.1. 스마트공장 구축목표에 필수 작성
- 성과지표(KPI) 설정시 안전개선을 지표(안전인증취득, 위험 작업건수) 필수 반영
- 산업안전 자율예방 활동 우수사업장이 『경남 산업안전시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』 신청 시 가점 부여
- 산업안전시 스마트공장시스템 구축
  - 안전센서 설치, AI기반 위험 예지보전, 안전관리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등 AI기반 산업안전기능을 추가하여 산업재해 예지보전 방지
- 사업 수행시 필수 의무사항
  - 견학프로그램: 구축 후 기업별 2년간 10회 견학 프로그램 운영(도입기업 전담 인력 1명 이상 배치)
  - 스마트공장 구축 후 홍보물 제작에 따른 동영상 촬영 협조

# 1. 사업개요

## □ 사업개요

- (사업 목적) 중소·중견기업 제조 현장에 적합한 고도화 수준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통해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및 산업재해예방 시스템 구축
- (지원 대상) AI 스마트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도내 4개 시(창원, 진주, 김해, 양산)에 소재한 스마트공장 구축 수준(수준 확인 포함) ‘기초수준’ 이상으로 확인된 도내\* 중소·중견\*\* 제조기업
- (지원 내용) 중간1 수준 이상(AI·디지털트윈 기반 실시간 관제, 분석·예측 등)의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동시에 산업현장의 위험요소를 실시간 감지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경남 산업안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
  - 안전센서 설치, AI기반 위험 예지보전, 안전관리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등 AI기반 산업안전기능을 추가하여 산업재해 방지하는 산업 안전AI 스마트공장시스템 구축지원
  - 기업이 보유한 제조생산·업무데이터 등 대량의 데이터를 AI를 통해 실시간 학습·분석하고, 제조혁신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지원
  - 고도화 수준(중간1)이상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

\* 구축전기초→(구축후)중간1, (구축전)중간1→(구축후)중간1 또는 중간 2 (구축전)중간2→(구축후)중간2

\* 사업계획시 산업안전 시스템(솔루션 등) 도입 필수

※ 적용사례(예시)

| 구분               | 취급품목                    | 구분             | 취급품목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안전               | 인공지능(AI)기반 인체감지시스템      | 안전             | 전기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 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음성인식 비상정지 보조 시스템 |
|                  | 고위험 기계설비 스마트<br>통합안전시스템 |                | 붕괴·변위 위험 경보시스템 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개구부 덮개 개폐 감지시스템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스마트 통합전도 방지시스템 | 보건               |
| 화학사고예방 통합모니터링시스템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
## □ 지원조건

### ○ (지원 과제) 4개 내외

※ 신청가능 지역: 창원, 진주, 김해, 양산(시군비 매칭이 된 지역만 가능)

### ○ (지원 조건)

- 지원기간 내 AI공장 구축이 가능한 기업은 도입 예정인 'AI기능'과 '적용 공정'을 선택하여(붙임1 참조) 최대 2.8억원 내에서 구축 지원

| 구축목표수준※          | 지원유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업비 구성<br>(지원금 최대기준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원기간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중간1 이상<br>목표설정필수 | 기초 → 중간1,<br>중간1 → 중간2,<br><b>중간1 → 중간1,</b><br><b>중간2 → 중간2</b><br>(동일수준 추가) | <b>도비 35%, 시군비 35%,</b> 자부담 30%<br>지원금 최대 2.8억원 이내<br>(도비1.4억원, 시군비 1.4억원) | 최대 9개월<br>이내 |

※ 구축목표수준은 KS X 9001-1(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) 표준 기준

- \* 과거 정부 지원사업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계획 대비 **초과 달성**한 경우는 기존과 동일한 구축 수준으로 올해 신규 신청하더라도 **"고도화"** 신청이 가능
- \* **자체적으로**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**'스마트공장수준확인사업'**을 통해 수준확인을 받은 기업은 올해 신규 신청할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과거 자체적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과 동일하더라도 **"고도화"** 신청이 가능

## 2. 신청자격 및 기간 · 방법 등

## □ 신청 기간·방법

### ○ (신청 기간) 공고일 ~ '26년 9월 30일

- ☞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 등에 따라 원활한 접속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2~3일 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  
(접수 마감일 17시 이후 신청·제출·수정 불가)
- ☞ 「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- 마이페이지 - 나의 담당과제 현황」 메뉴에서 과제신청 상태 "제출완료" 확인
- ☞ 공고 미숙지, 공급기업 미등록 등으로 최종 제출되지 않은 경우, 접수 불가

- (신청 방법) 도입기업·공급기업 컨소시엄 형태로 스마트공장 사업 관리시스템([smart-factory.kr](http://smart-factory.kr)) 온라인 접수

☞ 신청 방법 :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([smart-factory.kr](http://smart-factory.kr)) 접속 → 회원가입 → 로그인 → 사업관리 → 과제신청 → 사업계획서 내용입력

\* 신청 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([smart-factory.kr](http://smart-factory.kr)) 회원가입 필수

- (제출서류) 사업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온라인으로 등록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제출서류 목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공통<br>제출<br>(도입·공급<br>기업) | 필수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업계획서</li> <li>- 국세·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</li> <li>-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</li> <li>-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 정보활용동의서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필수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중소기업확인서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: <a href="http://sminfo.mss.go.kr">sminfo.mss.go.kr</a> / 한국중견기업연합회: <a href="http://www.fomek.or.kr">www.fomek.or.kr</a></li> </ul> </li> <li>-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각 1부('22~'24 or '23~'25)</li> <li>- <a href="#">공장등록확인서</a>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도입기업<br>제출                | 해당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종된사업장에 구축시 "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" 제출</li> <li>- 최근 년도('25)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서(해당시, 직접수출만 인정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한국무역협회(<a href="http://www.kita.net">www.kita.net</a>)에서 발급</li> </ul> </li> <li>- 가점 증빙 서류(해당시, 신청·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서류)</li> <li>- 법인등기부등본 1부(본점과 공장 확인 소재지 시)</li> <li>- 스마트공장 중복성 소명서</li> </ul> |
| 공급기업<br>제출                | 해당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(공급기업은 우대가점 해당 시)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\* 사업계획서 서식은 <https://smart-factory.kr>에서 다운로드 가능

\* 모든 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

\* 공급기업은 사업관리시스템([smart-factory.kr](http://smart-factory.kr))을 통한 사전등록 필수

## □ 신청 자격

- (도입기업) 도내 4개 시(창원, 진주, 김해, 양산)에 소재한 중소·중견 제조기업 중 스마트공장 구축 수준(수준 확인 포함) '기초수준' 이상으로 확인된 도내\* 중소·중견\*\* 제조기업
  - 사업자번호로 구분되는 도입기업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

\* 종된 사업장의 경우 종된 사업장별로 신청가능하며 증빙서류(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) 제출 필요

☞ 공고일로부터 협약체결일까지 본점 소재지 및 구축공장이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체  
 ☞ 국내 제조기업 중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른 중소기업 및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중견기업

- **(공급기업)**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로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‘공급기업 Pool’에 등록된 기업
  - \* (공급기업 Pool 등록 방법)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(smart-factory.kr) – 알림/참여마당 - 공지사항’에서 “공급기업 Pool 등록 안내(1077번 게시글)” 참조
- **(지원 제외 사항)**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

**< 부적격 사항 >**

-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▷ 휴·폐업중인 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▷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|
| ▷ 유흥·향락업, 숙박·음식점                      | ▷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   |
| ▷ 동일·유사한 사업계획서로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|                     |

- 자율형공장, 대중소상생형(AI트랙), ‘25년 동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(붙임2 참조)
-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서 ‘참여제한’ 중인 기업 (붙임2 참조)

※ 지원제외 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·협약 체결 등의 절차와 관계없이 평가 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

## □ **의무사항** [붙임4 참조]

- 견학프로그램 운영: 구축 후 기업별 2년간 10회 견학프로그램 운영(도입기업 전담 인력 1명 이상 배치)
- 홍보물 제작: 스마트공장 구축 후 홍보 동영상 촬영 협조

## **3. 추진 및 평가 절차**

평가, 선정, 협약 등 절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## □ **평가 절차** [붙임3 참고]

- **(요건 검토)** 도입기업이 제출한 제출서류, 자격기준 등 검토를 통해 적합과제를 사업계획서 작성 대상으로 선발

- **(서면 평가)**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, 지원 적정성 및 도입·공급기업 역량 등 평가

\* 신청 과제수에 따라 **서면평가 생략 가능**, '스마트공장 수준확인사업'을 통해 **수준 확인 받은 기업은 서면 평가 면제**

- **(기술성 평가)** 사업계획서 및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스마트공장 구축목표·방식, 달성가능성 및 기업역량 등 대면 평가

- **(현장 확인 및 원가계산)**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일치여부, 신청 가점 등의 확인 및 사업비 계상의 적정성 검토를 통한 사업비 조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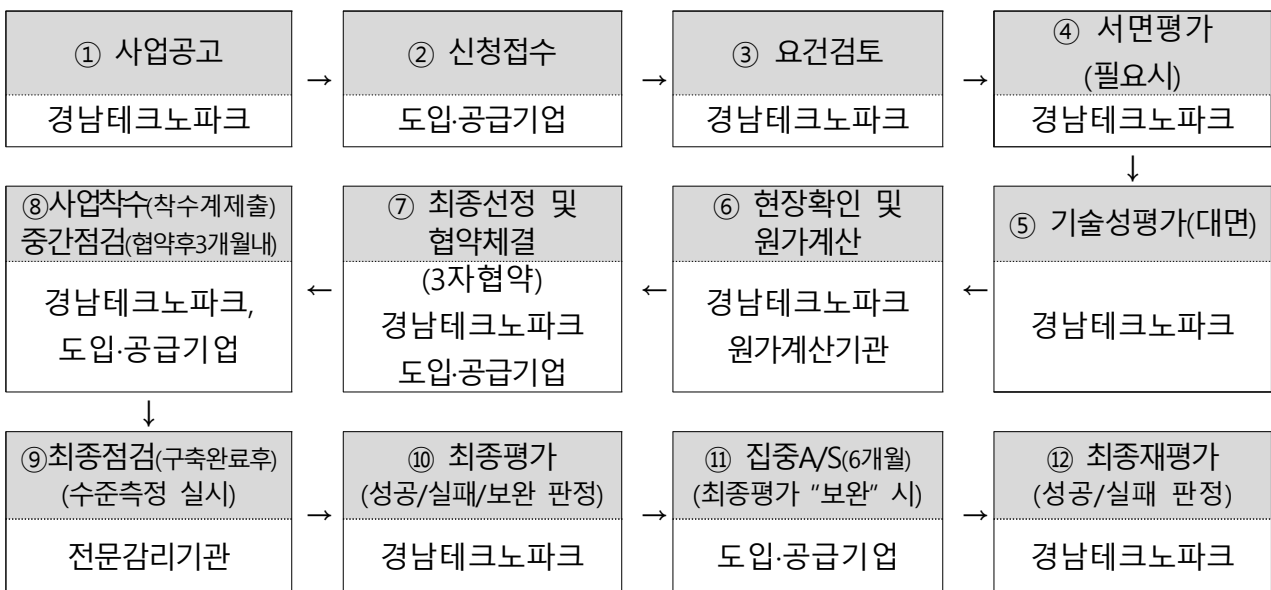
- 신축예정 공장의 경우, 일부 예외 인정\*(단, 공장설립(계획)승인서 및 신축공장 추진계획 검토를 통해 기간 내 구축 가능 여부 확인)

\* (예외 인정항목)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, 보유설비 정상가동 여부

- **(최종 선정)** 선정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지원 과제 확정

※ 단계별 평가 일정, 결과 등은 운영기관에서 안내 예정

## □ 추진 절차



\* ⑩ 최종평가결과 "보완"인 경우 '⑪ 집중A/S' 및 '⑫ 재평가' 진행

## 4. 유의사항

☞ 세부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신청 및 사업수행

### □ 신청 · 접수 관련

- (권소사업 구성)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간 권소사업을 구성하고, 함께 완성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 온라인 접수
  - 다만,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단독 신청도 가능(필요시 사업종료 후 별도 정밀 정산절차 진행)
- (구축 목표 설정) 기존 구축한 스마트공장 수준 이상을 목표로 설정
  - ※ (이전 스마트공장 구축 수준 확인방법) '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→ 사업안내 → 도입기업 지원현황' 에서 조회 (가장 높은 수준을 적용)
- (보안대책 수립) 구축 솔루션 및 설비의 안정성 보장, 기업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솔루션 구축·연동 등 보안 대책수립 필수

### □ 사업비 편성 관련

- (필수 비용) ①회계 정산 수수료, ②교육비 및 ③기술임치비용을 사업비의 기타 비용에 필수 포함
- ① 회계 정산 수수료: 지정 회계법인의 사업비 상시 모니터링 및 정산을 위한 수수료 필수 편성

<회계정산 표준수수료 현황>

| 총사업비 규모   | 표준수수료(공급가액 기준, 천원) | 비고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50백만원 이하  | 455                | 부가세 제외 |
| 200백만원 이하 | 637                |        |
| 400백만원 이하 | 910                |        |
| 400백만원 초과 | 1,182              |        |

\* 정산대상 사업비(총사업비) : 지원금 + 민간부담금

- ② 교육비: 스마트공장 기술교육(사업관리교육 및 기술교육) 수강 비용 (1백만원) 필수 편성

### ③ 기술임치비 : 'AI공장 구축' 유형 진행 시 스마트공장 구축 결과물의 기술임치비(45만원) 필수 편성

#### < 기술임치제도 >

- **(임치제도)** 사업 결과물의 핵심 정보를 보관하여 개발 결과, 보유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제도
- **(임치효과)** 기술임치 시 개발 및 보유사실 시점의 입증과 기술탈취방지, 유지보수 등에 임치내용을 활용가능
- **(의무사항)** 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에 따라 도입기업은 과제 완료시, 구축 결과물 일체를 **2년 이상 기술임치**하고, 기술임치계약서와 기술임치증 필수 제출

※ (임치기관)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(02-368-8484, [escrow@win-win.or.kr](mailto:escrow@win-win.or.kr))

- **(현물편성)**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(현금·현물 모두가능)와 도입기업 인건비를 합하여 기업부담금 중 20%(최대 24백만원까지) 내에서 현물로 편성 가능
  -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는 사용 시작일로부터 최대 3년의 비용\*을 편성 가능하며, 협약 기간 내에 클라우드 사용을 시작하여야 함
  - \* 소기업은 최대 5년 이내 편성가능 하며, 소기업 규모 기준은 [참고] 확인
  - 스마트공장 구축 및 시스템 안정화 등을 위한 도입기업 인건비 편성 가능
  - \* 인건비 지급 증빙자료(입금확인증 등) 및 수행일지 등 정산 시 확인 예정

## □ 교육 이수

-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도입·공급기업은 “스마트공장 교육”을 이수하고 중간 점검 또는 완료 보고 시 수료증을 필수 제출
- (교육기관)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 사업처(<https://ssup.kosmes.or.kr>)

#### <스마트공장 교육 현황>

| 구분              | 세부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사업관리교육<br>(온라인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상 : 도입·공급기업(대표자 및 임원, 실무자)[총 4명]</li> <li>- 내용 : 사업지침, 부실·부정구축방지교육, 우수사례, 사업비 사용법 등</li> <li>* 협약 후 중간점검 전까지 수료 후, 중간보고서 제출시 수료증 첨부</li> <li>- 비용 : 온라인교육 무료수강(<a href="https://ssup.kosmes.or.kr">https://ssup.kosmes.or.kr</a>)</li> </ul> |
| 기술교육<br>(오프라인)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상 : 도입기업(대표자 및 임원, 실무자)[총 2명]</li> <li>- 내용 : ①CEO·임원 대상 리더십 과정과 ②재직자 대상 교육과정을 모두 의무 수료하고, 완료보고서 제출 시 수료증 첨부</li> <li>- 집합교육으로 비용 발생(사업계획서에 교육비 100만원 계상)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\* 교육 상세내용 및 일정은 협약 체결 후 추진기관·운영기관에서 별도 안내 예정

## □ 기타 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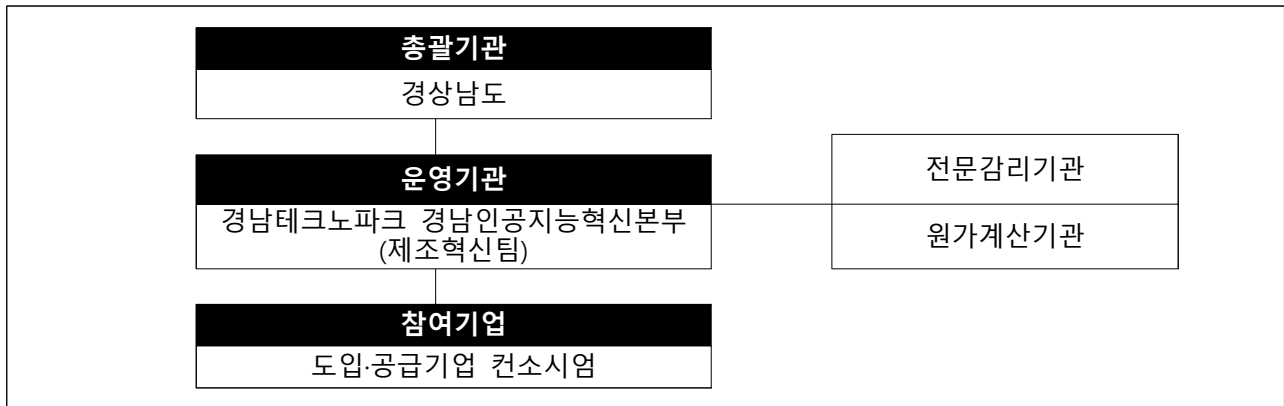
- 본 사업의 공고 이외의 사항은 2026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 지침 및 기준'을 따름
  - 단, 지원금에 대한 이행(지급)보증보험증권(도입기업은 추진기관을 피보험자로 하여 발행, 보증기간은 협약기간에 5개월을 가산하여 설정
  - 사업비 내역 중 기업부담금으로 차지하는 SW개발비에 대한 이행(선급금)보증보험증권(공급기업은 도입기업을 피보험자로 하여 발행, 보증기간은 협약기간에 5개월을 가산하여 설정
- 동 사업을 통해 구축한 솔루션의 로그기록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에 연동하여 구축완료 후 3년간 제출 필요
  - ※ 단, 시스템을 통한 로그기록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연 2회(6월·12월) 수기 등록
- 자격·유형·지역 등의 분류에 맞게 신청하여야 하며, 오기재·누락·허위기재 등의 사항 발견 시 평가·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, 협약 후에도 협약해약 및 제재 조치 등 가능
- 온라인 신청·접수 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담당자의 연락처 오류 여부 필수 확인
- 과제 선정된 기업은 원가계산 시 SW개발비 검증을 위해 원가계산 기관에서 기능요구명세서를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함

## 5. 추진근거 및 추진체계

## □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

-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, 시행규칙
-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(제2023-80호, '23.8.7)
-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사업 세부 관리지침 및 세부 관리기준
  - \*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적용함

## □ 사업 추진체계



## □ 담당 기관

| 구분   | 주체                    | 역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총괄기관 | 경상남도                  | - 사업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운영기관 | 경남테크노파크<br>경남인공지능혁신본부 | - 사업 추진계획 수립, 사업 세부관리지침 등 관리<br>- 운영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관리 및 평가 등<br>- 과제 신청 및 접수, 선정평가 운영, 과제 관리 등 |
| 참여기업 | 도입·공급기업 컨소시엄          | - 스마트공장 구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6. 문의기관

| 운영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| 문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화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경남테크노파크 경남인공지능혁신본부<br>(제조혁신팀) | 신청·접수, 사업계획서<br>작성, 선정평가, 유의사항 등 | 055-259-5117/5018 |

※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문의사항은 '사업관리시스템 - 전체메뉴(우상단) - 마이페이지 - 고객센터 - SR요청' 으로 문의

### ☞ 관련 웹사이트

-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: <http://www.mss.go.kr>
-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: <http://www.smart-factory.kr>
- 경남테크노파크 누리집: <http://www.gntp.or.kr>

-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: "경남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" / [http://pf.kakao.com/\\_xaSxgxb](http://pf.kakao.com/_xaSxgxb)



□ 제조AI 기능별·공정별 지원 안내

○ 제조공정 중심으로 전후방 가치사슬을 나열하고, 공정별 AI 기능을 예시로 정리한 “제조AI 매트릭스”를 사업 지원 시 활용

○ 도입기업은 도입할 AI 기능(행) 및 적용 공정(열)을 선택\*하여 사업 관리시스템(smart-factory.kr) 과제 지원 시 입력

- 사업계획서의 AI기능·적용 공정과 동일해야하며, 기술성평가를 통해 일치 여부 확인 예정

\* 차년도 지원 시, 과년도와 동일한 공정·AI기능을 선택하거나, 기술성평가를 통해 동일한 지원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 불가·미선정 처리 예정

< 제조AI 기능별·공정별 지원 예시\* >

| AI<br>기능 \ 공정 | A.<br>재무/<br>인사관리    | B.<br>제품기획/<br>설계    | C.<br>구매               | D.<br>제조공정             | E.<br>물류              | F.<br>환경/<br>에너지/안전       | G.<br>사후서비스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1.<br>인지      | 계약서 검토               | 기술 자료<br>검색          | 자재 구매<br>데이터 통<br>합 분석 | 작업자·<br>동작 감지          | 드론 활용<br>재고 추적        | 현장작업자<br>자세 위험<br>도분석     | 제품<br>에러코드<br>판별    |
| 2.<br>예측      | 채용시스템<br>운영          | 시제품 성<br>능 예측        | 원자재 가<br>격 예측          | 실시간 설<br>비 이상 예<br>측   | 실시간 재<br>고·공급 예<br>측  | 산업용 전<br>력 소 비 량<br>예측    | 고객 리뷰<br>분석         |
| 3.<br>자동화     | ERP 결합<br>업무 자동화     | 특허 분석<br>자동화         | 자재 수급<br>최적화           | 불량 분석<br>자동화           | 실시간 물<br>류 제어         | 공장 에너<br>지 자율제<br>어       | 예지보전<br>자동화         |
| 4.<br>소통      | 챗봇 기반<br>사내 정보<br>검색 | 코 드<br>CD/CI 자<br>동화 | 자동 발주<br>추천            | 디지털 트<br>윈 내 실시<br>간협업 | 배송 경로<br>최적화          | AI 기반 안<br>전점검 AR<br>챗봇   | 보이스봇<br>고객 문의<br>처리 |
| 5.<br>생성      | 업무<br>보고서<br>생성      | 신제품<br>아이디어<br>생성    | 수요예측과<br>협업 최적<br>화    | 가상 품질<br>평가            | 디지털<br>트윈 기반<br>물류 창고 | 탄소배출&<br>환경영향평가<br>리포트 생성 | 매뉴얼<br>제공           |

\* 공정별, AI기능별 세부적인 예시는 [별첨] 제조AI Use-case 참조

## 붙임 2

## 동시수행 제한사업 목록

☐ 동시 수행 제한사업 목록(기존사업 수행중인 경우)

| 사업명(지원유형)                    | 2022 | 2023 | 2024 | 2025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- 자율형공장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|      |
| - 제조AI특화 스마트공장, 대중소상생형(AI트랙) |      |      |      |      |

※ 음영이 칠해진 해당 연도 사업을 진행 중인 경우, 26년 제조AI특화 스마트공장과 동시수행 불가

※ 단, 협약서 상 구축기간이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(공고 접수마감일 기준)

☐ 동시 선정·신청 제한사업 목록

| 26년 사업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① 정부형 스마트공장<br>(점프업 및 레전드50+, 지역특화형 포함) | ①~⑦ 사업간 동시 수행 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② 자율형공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③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(AI트랙 제외)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④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⑤ 디지털 협업공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⑥ R&D성과확산 스마트공장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⑦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⑧ 경남 산업안전AI 스마트공장                       | ①~⑦ 사업 중 하나와 ⑧, ⑨, ⑩ 사업<br>동시수행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⑨ 제조AI특화(자율형공장 AI트랙)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⑩ 제조혁신자동화(제조로봇, 제조기반)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⑪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(사후관리)                    | ①~⑩ 진행중인 사업과 중복되지 않은 기 구축<br>스마트공장에 한해 가능(단, 유·무상 AS진행 중 신청불가) |

□ 요건검토

| 검 토 항 목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사업자등록증명원     | ◦ 사업자의 상태(계속/휴업/폐업), 사업자의 인적 사항 및 일치 여부, 업종 및 업태 확인 |
| 중소·중견기업 확인서  | ◦ 기업규모 및 유효기간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 | ◦ 세금 체납·유예 여부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재무제표         | ◦ 부채비율, 유동비율 등 경제지표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공장등록확인서      | ◦ 공장 소재지 및 소유/임대 형태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가점           | ◦ 산업안전 자율예방활동 우수 사업장, 공급기업 본점 소재지, 인증기업(QC) 여부 확인   |

□ 서면 평가지표

| 평가 항목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배점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스마트공장 구축<br>필요성<br>(30점) | ◦ 데이터 수집·분석 및 공정통합 관리 등 스마트공장의 특성을 적용할 제조공정의 보유 또는 운영할 계획이 있는가? | 15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◦ 스마트공장 구축 시 데이터 수집·분석 및 공정통합 관리 등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가?          | 15  |
| 지원 적정성<br>(35점)          | ◦ 공정개선 및 스마트공장 고도화 목적과 부합하고 있는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5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◦ 도입기업의 현재 모습(현행업무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등)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?                 | 10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◦ '데이터에 기반하여 생산공정을 관리하고 개선하는 지능형공장' 구현을 목표로 하는가?                | 10  |
| 공급기업 역량<br>(15점)         | ◦ 공급기업의 사업수행 전문성(기술력) 및 투입인력(개발PM 등)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가?            | 15  |
| 도입기업 역량<br>(20점, 정량평가)   | ◦ 매출액 증가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◦ 영업이익 증가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◦ 부채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◦ 수출실적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   |
| 총 점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0 |

※ (참고) 도입기업 역량 배점기준

| 항목      | 배점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|
|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|
|         | 5점    | 4점           | 3점            | 2점            | 1점     |
| 매출액증가율  | 12%이상 | 12%미만~9%이상   | 9%미만~6%이상     | 6%미만~3%이상     | 3%미만   |
| 영업이익증가율 | 10%이상 | 10%미만~7.5%이상 | 7.5%미만~5%이상   | 5%미만~2.5%이상   | 2.5%미만 |
| 부채비율    | 60%미만 | 100%미만~60%이상 | 140%미만~100%이상 | 180%미만~140%이상 | 180%이상 |
| 수출실적    | O     | -            | -             | -             | X      |

- \* 재무현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, 매출액 증가율(1점), 영업이익 증가율(1점), 부채비율(1점) 부여  
 \* '24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기업은 매출액 증가율(3점), 영업이익 증가율(3점) 부여  
 \* '25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기업은 매출액 증가율(3점), 영업이익 증가율(3점), 부채비율(3점) 부여

## □ 기술성 평가지표

| 평가 항목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배점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도입·공급<br>기업 역량<br>(20점)       | ◦ 상시 종업원 수, 매출액, 수출액(해당되는경우), 영업이익, 부채 비율 등 기업 현황이 양호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인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| 5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◦ 도입기업의 자부담비율 등을 통해 스마트공장 고도화 및 확장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제시하였는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◦ 공급기업의 사업수행 관련 AI 전문성(기술력) 및 투입인력(개발 PM 등)의 적정성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는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◦ "추진조직 및 업무분장"과 "지원계획" 등에서 도입기업/공급기업의 투입인력이 사업수행에 적절한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   |
| 스마트공장 구축<br>목표 설정<br>타당성(25점) | ◦ 도입기업의 현재 모습(현행업무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등)을 명확히 제시되었으며, AI 자율형공장으로 해결가능한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◦ 스마트공장 구축 "주요 내용"의 범위가 명확하고, "목표수준"에 부합되도록 작성되었는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◦ 수행하고자 하는 "주요 공정별 스마트화 추진 목표"의 내용이 데이터 수집·분석 및 공정통합 관리 등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, "목표수준" 달성에 적합한가? | 5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◦ 기존 문제점 및 필요성 대비 공정개선 성과지표와 AI목표가 연계되었는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   |
| 스마트공장 구축<br>내용 적절성<br>(30점)   | ◦ "데이터집계 포인트"의 제시가 도입기업 제조공정도를 토대로 각 공정별 수집 대상 데이터의 종류와 집계방법(자동, 반자동, 수동) 등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?      | 5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◦ AI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거나, 구축단계에서 추가적으로 수집가능한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◦ AI자율형공장의 구축범위와 AI모델의 유형, 데이터 수집 및 처리방안 등 구축내용이 명확한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◦ "솔루션 기능 구성도"가 도입기업 업종의 목표수준에 부합되는 기능으로 적절히 제시되었는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◦ 기존 시스템과의 통합연계 등 고도화 계획이 적절한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   |
| 스마트공장 구축<br>목표달성 가능성<br>(25점) | ◦ 성과지표 설정이 타당한가? (구축목표 - 구축내용 - 성과지표 간 내용 연결, 기존수치/목표수치의 근거제시, 지표 계산식 제시, 기대효과금액 등의 적절성)      | 10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◦ AI기능에 대한 시나리오 및 검증계획이 적절한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◦ "추진일정 총괄표"와 "산출물 예정 목록"간의 단계가 일치하며, "산출물 예정 목록"에서 각 단계별 필수 산출물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가?              | 5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◦ 정부의 정책방향과 구축업종, 해당 산업에 제조혁신 파급효과가 높은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   |
| 가점(5점)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5) |
|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0 |

※ 동점 과제는 '①가점 제외한 총점, ②구축내용 적절성, ③구축목표설정 타당성, ④구축목표 달성가능성, ⑤기업역량'의 점수가 높은 과제 순으로 선정

※ (참고) 가점 항목(1개)

| 구분 | 항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세부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출 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산업안전<br>자율예방활동<br>우수 사업장<br>(3점) | ◦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또는<br>KOSHA-MS 인증 사업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신청일 기준<br>인정 유효기간 내<br>(인증서 제출) |
| 2  | 공급기업<br>소재지<br>(본사 기준)<br>(3점)   | ◦ 공급기업(본사 기준) 소재지가 경남<br>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인등기부 등본                        |
| 3  | 추천상품(QC)<br>지정<br>(3점)           | ◦ 도입기업이 경상남도 추천상품(QC)<br>지정 제조기업 여부 (2026년 상반기<br>기준)<br>◦ 유효기간 확인 | 경상남도<br>추천상품(QC)<br>지정서         |

※ 가점 항목당 3점, 최대 5점 가점 부여(최대 2개까지 인정)하며, 사업 신청마감일까지 유효한 서류를 제출한 기업만 인정

## ☐ 현장 확인 항목

| 확인 항목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확인여부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사업계획서<br>대조·확인 | ◦ 구축 대상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(휴·폐업 등) | 적/부  |
|                | ◦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공정, 설비 등 일치 여부   | 적/부  |
|                | ◦ 기 보유설비 이상유무(정상가동 등)         | 적/부  |
| 가점여부           | ◦ 신청가점 사실여부 확인 및 반영           | -    |

**□ 견학 프로그램 운영**

- (개 요) 경남형 산업안전 스마트공장 견학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기업과 학생들에게 스마트공장 현장 이해도 향상 및 벤치마킹 기회 제공
- (주요내용) 중소기업 임직원, 일반인, 학생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 공장 시범공장 선정 기업 대상 벤치마킹 및 현장교육 실시
- (우수사례 발굴) 기초 및 고도화 스마트공장 구축 진행 시 우수 기업 발굴을 통하여 기업의 자발적 벤치마킹 실시 분위기 조성
- (수행내용) 기업별 2년간 10회 견학프로그램 운영

**□ 홍보물 제작**

- (개 요) 여전히 기술적 진입장벽과 관련 정보 부족으로 심리적 저항감이 존재하는 레거시 제조업체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관련 온라인 홍보서비스를 실시하여 스마트공장 도입의식 고취
- (주요내용)
  - 경남 산업안전 스마트공장, 패스트 트랙 등 모범적 구축사례 기업을 선정하여 스마트공장 홍보영상 제작 후 경남테크노파크 유튜브 채널(<https://www.youtube.com/@gyeongnamtp>)을 통하여 배포
- (수행내용) 스마트공장 구축 후 홍보영상 제작에 필요한 촬영 협조

## 참고1

## KS X 9001-1(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) 표준 기준

| 구분      | 현장자동화           | 공장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업자원관리          | 제품개발                     | 공급사슬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고도      | IoT/loS기반의 CPS화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인터넷공간 상의<br>비즈니스<br>CPS네트워크 협업 |
|         | IoT/loS화        | IoT/loS화(모듈)화 빅데이터 기반의 진단 및 운영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중간2     | 설비제어<br>자동화     | 설비제어<br>자동화                    | 실시간<br>공장제어     | 시뮬레이션과<br>일괄 프로세스<br>자동화 | 다품종 개발 협업                      |
| 중간1     | 설비데이터<br>자동집계   | 설비데이터<br>자동집계                  | 실시간<br>의사결정     | 기술 정보 생성<br>자동화와 협업      | 다품종 생산 협업                      |
| 기초      | 실적집계<br>자동화     | 실적집계<br>자동화                    | 공정물류<br>관리(POP) | 서버를 통한<br>기술/납기 관리       | 단일 모기업 의존                      |
| ICT 미적용 | 수작업             | 수작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수작업             | 수작업                      | 전화와 이메일 협업                     |

## 참고2

##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계상가능 소기업 규모 기준

|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분류기호       | 규모 기준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1. 식료품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C10        | 평균매출액등<br>120억원 이하 |
| 2. 음료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C11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3.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                | C14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4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   | C15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5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| C19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6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)         | C20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7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  | C21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8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| C23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9. 1차 금속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C24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10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         | C25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11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       | C26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12. 전기장비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C28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13.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 | C29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14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   | C30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15. 가구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C32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16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               | D          | 평균매출액등<br>80억원 이하  |
| 17. 수도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E36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18. 농업,임업 및 어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A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19. 광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B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20. 담배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C12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21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)                | C13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22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           | C16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23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| C17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24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                       | C18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25. 고무제품,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| C22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26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               | C27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27.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    | C31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28.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| C33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29. 건설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F          | 평균매출액등<br>50억원 이하  |
| 30. 운수 및 창고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H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31. 금융 및 보험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K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32. 도매 및 소매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G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33. 정보통신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J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34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<br>(수도업은 제외한다) | E (E36 제외) | 평균매출액등<br>30억원 이하  |
| 35. 부동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L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36.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     | M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37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              | N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| R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39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                     | C34        | 평균매출액등<br>10억원 이하  |
| 40. 숙박 및 음식점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I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41. 교육 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P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42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     | Q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43. 수리(修理)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 | S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
1.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

2.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(C31202)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, 항공 기용 부품 제조업(C31322)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.